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6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김태년 · 이훈기 · 이재정

김한규 · 이광희 · 안도걸

박민규 · 진성준 · 조인철

전진숙 · 황정아 · 박해철

김 현 · 박용갑 · 이기현

서영석 · 손명수 · 김영호

김우영 · 강준현 · 주철현

최민희 · 권향엽 · 정태호

이주희 · 진선미 · 박지원

김영진 의원(28인)

제안이유

코스닥은 기술·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상장·감시·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신속한 시장 운영이 어려웠고, 그 결과 코스닥의 경쟁력과 신뢰가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도 높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 등(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6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 2)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7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안 제414조의8부터 제414조의10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1부터 제414조의13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 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5)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안 제414조의14부터 안 제414조의18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시장감시법인 신설

1)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2)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19 및 제414조의20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등(안 제414조의23부터 제414조의25까지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4)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등(안 제414조의26 신설)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고, 독립이사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5)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등에 대한 협의(안 제414조의28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30부터 제414조의32까지 신설)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권한 및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다.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 정비

1)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안 제378조제3항 신설)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함.

2)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거래소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서 “거래소지주회사”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414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거래소를 지배할 것
2. 거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제78조제7항 중 “제8조의2제5항제1호”를 “제8조의2제6항제1호”로 한다.

제373조의7제2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제376조제1항제12호 중 “사항”을 “사항(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7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4조부터 제400조까지(제39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속한다.

제3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이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원은”을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은”으로 한다.

- ① 거래소의 임원은 사장, 시장감시위원장 및 이사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아니한다.

제381조제1항 전단 중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를 “제380조제1항의 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5조제1항 중 “이사장·사외이사”를 “사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외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의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8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39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혁신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상장 특례에 관한 사항
2. 존속 가능성, 공시의 충실성 또는 거래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의 신속한 상장폐지 기준에 관한 사항
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고 있는 자회사의 상장기준에 관한 사항

제4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시장감시 등의 업무 위탁) ① 거래소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지주회사의 제4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등인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4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제404조의 제목 중 “감리”를 “감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상거래의 심리”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지주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

제409조제2항 중 “자체적으로 수행하고”를 “수행하고”로 한다.

제411조제5항 중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422조제3항”으로 한다.

제7편의2(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편의2 거래소지주회사

제1장 총칙

제414조의2(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 ① 제8조의2제5항 각 호의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이하 “거래소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

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거래소지주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정관이 법령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거래소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자회사등을 지배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3(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에 관하여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를 준용한다.

제414조의4(허가받을 의무 등) ①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대상거래소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대상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14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6(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의3, 제6조의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44조, 제47조제5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조 및 제62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를」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등

제414조의7(업무)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14조의8(임원) ①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한다.

②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과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382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14조의9(이사회) ① 거래소지주회사에 제414조의8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0(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지주회사에 회장 및 사외 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1(임직원의 겸직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②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또는 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경우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2(업무의 위탁) ①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무위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의 발생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하는 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업무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3(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 및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63조, 제376조제2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제3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

제3장 소유 규제 및 감독 등

제414조의14(자회사등의 편입) ① 거래소지주회사(다른 거래소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거래소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회사등을 새로이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거래소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등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거래소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따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

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및 승인의 세부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5(자회사등 사이의 주식소유 특례)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4조의16(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유를 승인한 경우
3. 거래소지주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4.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소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의 제한에 관하여 제40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14조의17(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14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

제414조의18(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제1항 및 제4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

제7편의3(제414조의19부터 제414조의3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편의3 시장감시법인

제1장 총칙

제414조의19(설립) ①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14조의20(인가) ① 제414조의23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2. 정관,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4조의2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장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시장감시법인”, “자율규제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22(준용규정) ①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관하여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

제2장 조직 등

제414조의23(업무) ① 시장감시법인은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24(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지주회사
2. 거래소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414조의25(정관) 시장감시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출자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

제414조의26(임원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

사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독립이사(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상근 임원 또는 집행간부이거나 상근 임원 또는 집행간부이었던 자가 아닌 자로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이사회 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법인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이사회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법인의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1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구성, 선임 방법·절차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의27(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 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414조의28(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는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4조의29(준용규정) 거래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제403조부터 제40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감독 등

제414조의30(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20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0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14조의20제4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장감시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 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

제414조의31(금융위원회의 승인) 시장감시법인은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4조의32(준용규정)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제4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

제423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14조의17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의3. 제414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지주회사 임직원

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7의4. 제414조의30제1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7의5. 제414조의3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장감시법인 임직원
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426조제4항 중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를 “금융투자업관
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
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 시장감시법인,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로 한다.

제444조에 제27호의3부터 제2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7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은 자

27의4.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4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래소
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7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0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제445조제12호 중 “제383조제3항”을 “제414조의13, 제414조의27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6호 중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 또는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7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2호 중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제414조의13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7제1항을”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을 “제335조의7, 제379조, 제414조의5 또는 제414조의21을”로 하고, 같은 항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제48호의3부터 제48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의2. 제4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4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장감시법인(이하 “거래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나목 본문 중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거래소등에 상응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거래소가”를 “거래소등이”로 한다.

[별표 14의2]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14조의1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에 따른 허가 또는 제414조의3(제373조의4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2. 제414조의7에서 정하는 업무 외의 영리업무를 영위한 경우
3. 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제414조의8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80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38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1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를 구성한 경우
5. 제41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
6. 임직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41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14조의1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8.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제414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3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12.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13.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3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384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15. 자회사등의 편입과 관련하여 제414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4조의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7. 제414조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14조의18에서 준용하는 제408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9. 제414조의18에서 준용하는 제40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 제414조의18에서 준용하는 제4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1.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2.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3.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24.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5.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6.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2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14의3]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14조의3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0에 따른 인가 또는 제414조의22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14조의2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3. 제414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4. 이사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제414조의26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제414조의26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14조의26제6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임원을 선임한 경우
7. 제41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8. 제414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9.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제414조의27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14조의30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7호, 같은 조 제2항제

- 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 제414조의30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14조의31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414조의32에서 준용하는 제4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6.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17.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18. 제426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0.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21.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이 법에서 “거래소지주회</u> <u>사”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u> <u>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금융투</u> <u>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u> <u>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이하</u> <u>“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u> <u>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u> <u>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41</u> <u>4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u> <u>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u> 1. <u>하나 이상의 거래소를 지배</u> <u>할 것</u> 2. <u>거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전</u> <u>체 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u> <u>의 50을 초과할 것</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생 략)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 한 특례) ① ~ ⑥ (생 략)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 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략)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생략)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8조의2제6항제1호-----

-----.

⑧ (현행과 같음)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

1. (현행과 같음)

2. -----제5호-----

3. (현행과 같음)

제376조(정관) ① -----

-----.

1. ~ 11. (생략)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u>사항</u> 13. (생략) ② (생략)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② (생략) <u><신설></u> 제380조(임원) ① <u>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u> 1. <u>이사장 1인</u>	1. ~ 11. (현행과 같음) 12. -----<u>사항(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u>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4조부터 제400조까지(제39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속한다.</u> 제380조(임원) ① <u>거래소의 임원은 사장, 시장감시위원장 및 이사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u>
---	--

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
 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
 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
 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
 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

⑥ (생략)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
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
 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거래소
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
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은-----

 -----.

⑥ (현행과 같음)

제381조(이사회) ① -----제3
80조제1항의 임원으로-----
 -----.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생략)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이사장·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시장법인 대표 2인

-----.

② -----

-----설
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외이사-----
-----.

② 제1항의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생략)

제387조(회원) ① (생략)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390조(상장규정) ①·②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387조(회원)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90조(상장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혁신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상장 특례에 관한 사항

2. 존속 가능성, 공시의 충실성 또는 거래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의

<u><신 설></u>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u>감리</u>) ① (생략)	<u>신속한 상장폐지 기준에 관한 사항</u> 3. <u>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고 있는 자회사의 상장기준에 관한 사항</u> 제402조의2(시장감시 등의 업무 위탁) ① 거래소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 지주회사의 제4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등인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4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u>감리 등</u>) ① (현행과 같음)
--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생략)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

(2)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

③ (현행과 같음)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

 ---.

1. (현행과 같음)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외국 법령에

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신 설>

3.·4. (생략)

② ~ ④ (생략)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생략)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지주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의2.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행하고-----

-----.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22조제3항-----

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7편의2 거래소지주회사

제1장 총칙

제414조의2(거래소지주회사의 허

가) ① 제8조의2제5항 각 호의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이하 “거래소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거래소지주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정관이 법령에 적합할 것

<신 설>

<신 설>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거래소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자회사등을 지배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3(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에 관하여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를 준용한다.

제414조의4(허가받을 의무 등) ① 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신 설>

사유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
서 “허가대상거래소지주회사”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대상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
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제414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거래소
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14조의6(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의3, 제6조의4, 제17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44조, 제47조제5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조 및 제62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등

제414조의7(업무) 거래소지주회사

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신 설>

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14조의8(임원) ① 거래소지주
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
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한다.

②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과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80조(제
1항은 제외한다) 및 제382조(제
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신 설>

제414조의9(이사회) ① 거래소지
주회사에 제414조의8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
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4조의10(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지주회사에 회장 및
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
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

<신 설>

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1(임직원의 겸직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이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②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또는 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경우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신 설>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2(업무의 위탁) ①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무위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의 발생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하는 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신 설>

<신 설>

<신 설>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업무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3(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 및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63조, 제376조제2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제3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

제3장 소유 규제 및 감독 등

제414조의14(자회사등의 편입) ①

거래소지주회사(다른 거래소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거래소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회사등을 새로이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의 종류·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거래소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거래소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등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거래소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따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 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회사가 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신 설>

<신 설>

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및 승인의 세부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4조의15(자회사등 사이의 주식소유 특례)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4조의16(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 또는 외국 거래

소지주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유를 승인한 경우

3. 거래소지주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4.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소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의 제한에 관하여 제40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14조의17(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14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
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
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
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
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다.

제414조의18(준용규정)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제1항 및 제4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지주회사”로 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제7편의3 시장감시법인

제1장 총칙

제414조의19(설립) ① 시장감시법
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
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14조의20(인가) ① 제414조의2
3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업무를 수행하
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
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
출 것

2. 정관,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
조정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

<신 설>

<신 설>

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
합할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
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에 따
른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
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4조의21(유사명칭의 사용금
지) 시장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시장감시법인”, “자
율규제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14조의22(준용규정) ① 시장감
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관
하여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
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시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감시법인”으로 본다.

제2장 조직 등

제414조의23(업무) ① 시장감시법인은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4조의24(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지주회사
2. 거래소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414조의25(정관) 시장감시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출자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

제414조의26(임원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독립이사(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상근 임원 또는 집행간부이거나 상근 임원 또는 집행간부이었던 자가 아닌 자로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법인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

임하고, 독립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법인의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신 설>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1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구성, 선임 방법·절차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의27(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및 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414조의28(거래소 업무관련 규
정 등에 대한 협의) 제402조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
법인에 위탁한 거래소는 업무
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감
시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4조의29(준용규정) 거래소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감
시법인에 대하여는 제403조부
터 제40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감독 등

제414조의30(시장감시법인에 대
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시
장감시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20제1항에 따른 인가
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414조의20제1항에 따
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14조의20제4항에 따른 인
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

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
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
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
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장감시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
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

<u><신 설></u>	<u>제414조의31(금융위원회의 승인)</u> <u>시장감시법인은 정관, 시장감시</u> <u>규정, 분쟁조정규정, 그 밖의</u> <u>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u> <u>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u> <u>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u> <u>한다.</u>
<u><신 설></u>	<u>제414조의32(준용규정) 시장감시</u> <u>법인에 대하여는 제410조를 준</u> <u>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u> <u>“시장감시법인”으로 본다.</u>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423조(청문) ----- ----- ----- ----- -----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2. 제414조의17제1항에 따른</u> <u>허가의 취소</u>
<u><신 설></u>	<u>7의3. 제414조의17제3항 또는</u> <u>제4항에 따른 거래소지주회사</u> <u>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u> <u>면직요구</u>
<u><신 설></u>	<u>7의4. 제414조의30제1항에 따른</u> <u>인가의 취소</u>
<u><신 설></u>	<u>7의5. 제414조의30제3항 또는</u>

8.·9. (생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시장감시법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9. (현행과 같음)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

-----.

⑤ (현행과 같음)

⑥ 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 2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

⑦·⑧ (생략)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7의2. (생략)

<신설>

<신설>

-----.

⑦·⑧ (현행과 같음)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

-----거래소, 시장감시법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②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1. ~ 27의2. (현행과 같음)

27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7의4.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414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제414조의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8. · 29. (생 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 35. (생 략)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 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27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4조의20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8.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제414조의13, 제414조의27제3항-----

13. ~ 35. (현행과 같음)

36. -----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 또는 제414조의1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7제2항을-----

자	----- -----
37. ~ 41. (생략)	37. ~ 41. (현행과 같음)
42. <u>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u>	42. <u>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제414조의13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7 제1항을</u> ----- -----
43. ~ 48. (생략)	43. ~ 48.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 ----- ----- -----.
1. ~ 43. (생략)	1. ~ 43. (현행과 같음)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u>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u>	44. ----- ----- <u>제335조의7, 제379조, 제414조의5 또는 제414조의21을</u> ----- -----
44의2. ~ 48. (생략) <u><신설></u>	44의2. ~ 48. (현행과 같음) 48의2. <u>제4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48의2. ~ 48의6.</u> (생략)	<u>48의3. ~ 48의7.</u> (현행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와 같음)
49. (생략)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